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86호, 2021. 12.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 가.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 나.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중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②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관련)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7694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교육, 건강검진, 석면) 044-202-7746, 7739, 7738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7758, 7754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044-202-7729, 7733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를 말한다.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리기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 작업대
 -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送氣)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가. 연삭기(研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 나. 산업용 로봇
 - 다. 혼합기
 -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 바. 컨베이어
 -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라. 연삭기 덮개
 - 마. 목재 가공용 등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